

철도경찰대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철도경찰대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2.1.3.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부서		가입금지 직책(업무)		비고
		인원	해당 업무	
본대	운영지원과	6	인사(2), 예산(4)	
	기획과	5	감찰·대테러(3), 협의회 업무(2)	
	수사과	29	조사·수사, 대테러(폭발물탐지)	RSC제외
	센터	4	지휘·감독 직책	센터장
서울지방 철도경찰대	운영지원과	4	인사(2), 예산(2)	
	수사과	42	조사·수사, 대테러(폭발물탐지)	
	광역철도수사과	29	조사·수사	
	센터	9	지휘·감독 직책	센터장
부산지방 철도경찰대	운영지원과	3	인사(2), 예산(1)	
	수사과	23	조사·수사, 대테러(폭발물탐지)	
	센터	5	지휘·감독 직책	센터장
광주지방 철도경찰대	운영지원과	3	인사(2), 예산(1)	
	수사과	19	조사·수사, 대테러(폭발물탐지)	
	센터	4	지휘·감독 직책	센터장
제천지방 철도경찰대	운영지원과	3	인사(2), 예산(1)	
	수사과	12	조사·수사, 대테러(폭발물탐지)	
	센터	4	지휘·감독 직책	센터장

* 가입금지 공무원(시행령 제3조 제1항) : 지휘·감독 직책, 인사, 예산, 물품출납, 감사, 조사, 수사, 협의회 업무

** 기존 상설협의회 회원은 중복 가입 금지